

2.5단계 + 방역수칙강화

(1.18. ~ 1.31.)

English

GO



질병관리청

부산광역시 | 코로나19

코로나19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몸으로

런

집으로 달려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지원정책

코로나19 알림

<p>확진자 현황</p> <p>주요집단사례</p> <p>확진자 추세</p> <p>부산시 상황보고</p> <p>일자별 현황</p>	<p>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p> <p>마스크 착용 의무화</p> <p>마스크 사용 캠페인</p> <p>예방행동수칙</p> <p>자가격리자 행동수칙</p> <p>가족/동거인 행동수칙</p> <p>코로나19 신고</p>	<p>산형 재난지원금(총괄)</p> <p>부산형 플러스지원금</p> <p>정부지원</p> <p>인터넷 방역단</p> <p>클린존 (방역안심시설)</p>	<p>공지사항</p> <p>코로나19 Q&A</p> <p>마스크 의무화 Q&A</p> <p>임시선별검사소</p> <p>선별진료소</p> <p>부산 국민안심병원</p> <p>부산 호흡기전담클리닉</p> <p>코로나19 심리지원</p> <p>홍보(서식·앱) 다운로드</p>
---	---	--	--

1월 23일 (Sat) 13시30분 발표



지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일	-	-	-	-	3
누적	27	60	79	61	286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2	4	-	-	1	3
230	172	172	221	159	144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기타
1	2	5	-	-	-
68	126	123	180	48	384

21. 1. 22.(금) 일일상황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관련 브리핑 전문 (21. 1. 16.)



코로나19 전국 현황 자세히 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후 비교표



(원칙)2.5단계 + (추가)일부 방역수칙 강화

1. 18.(월) 00시 ~ 1. 31.(일) 24:00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① 모임·행사	
사적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핵심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 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 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체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편의점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금지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 체험 시에는 영업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기타시설	▶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직장근무	<p>▶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p> <p>-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p> <p>-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p> <p>▶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p>

※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행정명령	<p>▲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별도 해제시까지</p> <p>▲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0-440호, 재난대응과) : 2020.11.12</p> <p>▲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0-506호,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 : 2020.12.14</p> <p>▲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및 변경 고시(고시 제2021-23호, 사회재난과) : 2021.1.16</p>
위 반 시	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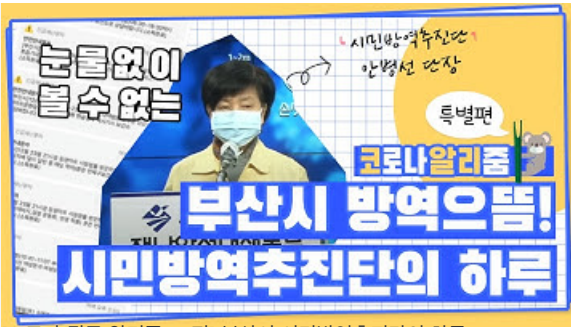
구분	소속	담당자	연락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마스크 착용의무화 총괄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	신혜진	☎ 888-3334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보건위생과	김범현	☎ 888-3374
목욕탕·사우나		김익곤	☎ 888-3395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윤진수	☎ 888-5161
PC방, 오락실		김지연	☎ 888-5151
영화관, DVD방		최연희	☎ 888-5141
멀티방		김지연	☎ 888-5151
콜라텍	재난대응과	정우철	☎ 888-2955
공연장	문화예술과	박선옥	☎ 888-504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신현숙	☎ 888-4757

구분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상점·마트·백화점		조성란	☎ 888-4954
학원, 독서실	교육협력과	김민경	☎ 888-2005
스터디 카페	교육협력과	김민경	☎ 888-2005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지현경	☎ 888-3455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창업과	최그림	☎ 888-4385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김효진	☎ 888-3275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성중학	☎ 888-1604
대중교통	버스운영과	김강식	☎ 888-3962
	택시운수과	김현준	☎ 888-3997
	도시철도과	이서현	☎ 888-4084
의료기관	보건위생과	박종태	☎ 888-3425
약국		김진숙	☎ 888-338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하도훈	☎ 888-3274
주·야간보호시설		이동현	☎ 888-3271
콜센터	투자통상과	조용준	☎ 888-4442



마스크를 벗는 순간





[코로나 뭐든 알리줌 10편]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의 하루



라바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해요!



[코로나 뭐든 알리줌 9편] 부산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생겼DAY~





[코로나 뭐든 알리줌 8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되면 생기는 일



[코로나 뭐든 알리줌 7회] 우리의 지구를 부탁해 똑똑한 슬기로운 집콕생활!



[코로나 뭐든 알리줌 6편] 부산 BMW 믿어도 되나??



[코로나 뭐든 알리줌 5편] 힘내세요 만덕씨



[코로나 뭐든 알리줌 4편] 역학조사관의 오해와 진실! 부산시 역학조사반은 어떤 일을 할까?





[코로나 뭐든 알리 줌 3편] 뭐? 이거 벗으면 과태료 부과?! 마스크 의무화의 모든 것



[코로나 뭐든 알리 줌 2편] 동선 숨기고 자가 격리 거부? 구상권에 관한 모든 것



[코로나 뭐든 알리 줌 1편] 열나고 기침도 난다! 나도 혹시 똑같? 코로나?